

지적측량 적부(재)심사 의결서

청구인	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
대상토지	시 군 구	읍 면	동 리	번지
청구취지				
의결주문				
의결이유		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·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(지방)지적위원회위원장

직인